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52호 2022. 12. 26.(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87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87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8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9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2-187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자생단체 회원 중복 가입과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개추첨 방식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
- 현행 조례상 명확한 해촉일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자치를 보다 폭넓게 활성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 (제6조제1항)
- 위원 선정 방식 개선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
- 해촉일 기준 정립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 자치행정과 (☎749-72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221, FAX 749-7219
- E - mail : violetcafe@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개정(안) : 붙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붙임 1]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 ‘자치회장’ 이라고” 를 “ “자치회장” 이라” 로, “ ‘부회장’ 이라고” 를 “ “부회장” 이라” 로, “50명” 을 “30명”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만,” 을 “이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선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의 위원추첨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첨
2. 제9조의2의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 선정

제8조제2항 중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 를 “주민자치회” 로,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를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추첨위원회” 를 “주민자치회” 로, “제3항” 을 “제2항” 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위원추첨위원회” 를 “주민자치회” 로, “접수후” 를 “접수후”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중 “위촉한다.” 를 각각 “위촉”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1명”을 “각 1명”으로, “5명이하”를 “5명 이하”로 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추첨위원회를 둔다.

제9조제3항 중 “하고,”를 “하고, 위원추첨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장 추천 위원”을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천위원”을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위원장”을 “위원추첨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선정 방식을 선택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촉할 때에 그 해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요청이 의결된 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선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선정방식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려는 동의 적용한다.

②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위원추첨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동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아직 위원추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위원선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원 해촉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해촉일에 관한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5호 따라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의결이 있었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정수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을 넘어서는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 이라고 한다) 1명과 주민자치부회장(이하 ‘부회장’ 이라고 한다)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 ----- “자치회장” 이라 -----이하 “부회장” 이라 -----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 ----- 동별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 ----- ----- ----- ----- ----- ----- -----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1. 제9조의 위원추첨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첨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해	2. 제9조의2의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②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추첨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위원 선정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⑤

-----.

1. -----
----- 위촉

2. -----

----- 위촉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2.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 위원 2명 이내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해산하며,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추첨위원회를 둔다.

1. 공개추첨의 진행 절차·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개추첨 진행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
각 1명 ----- 5명 이하
-----.

③ -----
하고, 위원추첨회의 위원은-----

-----.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추첨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삭 제>

⑥ 위원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선정위원회를 통

한 위원선정 방식을 선택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

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1. ~ 5. (생략) ② ~ ③ (생략)	----- -----<u>다만, 제1호부터 제4호가</u> <u>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u> <u>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의 경우 해</u> <u>당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요청이 의결</u> <u>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기준 가격 및 면적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가격 및 면적을 안 제11조제3항으로 신설
-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31조제3항, 안 제38조제2호, 안 제39조제3호, 안 제39조제4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재무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362, FAX : 032-749-7349
- E- mail : queenysj@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31조제3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이하,기타 지역”을 “이하, 그 밖의 지역”으로, “2배이내”를 “2배 이내”로 “매각할때”를 “매각 할 때”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본호의”를 “이 호에 따른”

으로,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u>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u>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u>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3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생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 4. (생략)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영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

3.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2. (생략)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
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
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
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
000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
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
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
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
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단
독주택의 경우에는 200m²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
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
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1. ~ 2. (현행과 같음)

3. -----

----- 2분의 1 이상

4. -----

----- 이하, 그 밖의 지역

----- 2배 이내 -----

----- 매각할 때. 다만, -----

----- 이 호에 따른 -----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2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관련지번	신규도로명주소
2009.05.14	신송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교육기관 위치	송도동 21-41 외 1 필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57-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폐지 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